

건의안

— 설악산 국립공원내 쓰레기 불법 매립에 따른 관리개선 촉구 —

의안 번호	189
----------	-----

발의년월일 : 1993. 8. 23.

발 의 자 : 한영환의원외 11인

□ 주 문

설악산은 기암괴석과 계곡, 폭포등을 골고루 갖춘 대자연의 축소판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 사철마다 특유의 위용을 자랑하는 천하의 명산으로 불리워지고 있으며 수많은 희귀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곳으로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널리 알려진 국제적인 관광지로 우리지역의 자랑이자 한국의 자랑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통일을 대비한 금강산 - 설악산을 연계한 개발 계획이 각계 각처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국제적인 관광지로 손색이 없는 뛰어난 천혜 관광자원을 맑고 깨끗히 보존하자는 국민적인 붐이 조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작 국립공원을 관리하는데 앞장서야 할 공단 관리사무소에서 등산객이 버린 쓰레기를 하산하지 않고 공원내에 묻어온 것으로 밝혀져 설악산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자연훼손의 주범이었다는 사실에 속초시민과 더불어 설악산을 아끼는 모든 이에게 충격적인 사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폭우로 곳곳에 묻어 놓은 쓰레기들이
겉으로 드러나자 흙으로 다시 덮어 눈에 띄지 않도록 하는가
하면 공중화장실 뒷편이나 후미진 곳에 각종 쓰레기 더미들을
그대로 은폐·방치하여 음식찌꺼기등의 부패로 눈·코를 뜰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발생하여 관광지의 인상을 흐려놓고 있으며
특히, 화장실에서 발생한 쓰레기들이 계곡에 마구버려짐으로 인하여
하류의 취수장과 상수원수를 오염시키고 있어 자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겠다던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공단의
파렴치한 행위에 8만 속초시민과 함께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더구나 설악동 주민과 등산로변 상인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쓰레기를 묻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관계 당국에서는 조속히 근원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설악산 전역에 걸쳐 불법 쓰레기 매립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때, 그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앞으로는 부실관리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것을 개선 촉구하며, 첨언하여 이와같은 부실관리
실태를 볼때, 실질적인 공원관리에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국립공원 관리는 지방청에서 관리되어야 합리적이라 판단됨으로
관리의 지방청 이관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을 재촉구 건의합니다.

□ 제 안 이 유

설악산은 사시 사철 특유의 위용을 자랑하는 국외에도 널리 알려진 국제적인 관광지로 천혜의 관광자원을 맑고, 깨끗히 보존하자는 국민적인 붐이 조성되고 있으나, 공원관리에 앞장서야 할 공단에서 쓰레기를 불법 매립하는 부실관리로 극심한 공원 훼손을 초래하고 있어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사료되어 실질적인 공원관리를 위하여 국립공원 관리의 지방청 이관을 위한 공원관리 개선대책을 촉구 건의하는 것임.

동 해 지 방 해 운 항 만 청

우 240-130 동해시 승정동 606 / 전화 (0394) 33-0313 - 17 / FAX 33 - 0326

문서번호 항무 91570-825

시행일자 1993. 8. 5. (년)

수신 숙초시의회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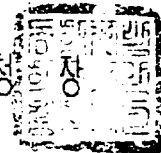
선결	의장	[인]	지		
			시		
접	일자 시간	'93. 8. 9	결재·공람	부의장	[인]
수	번호	193		과장	[인]
				계장	[인]
처리과	숙초시리				
담당자	[인]				

제목 건의서에 대한 회신

전문위원

1. 숙의회 13131-100 ('93.7.28)의 관련입니다.
2. 귀의회에서 우리청에 제출하신 "숙초항(북항) 개발에 따른 항만부지내 시민휴식 공간(공원) 조성을 위한 건의"에 대하여 검토한바,
3. 숙초항(북항)에 조성한 신부두 배후부지는 항만운영상 필수적인 기본시설인 창고, 야적장등 보관시설과 국제카훼리 터미널및 부대시설 그리고 화물 양.적하를 위한 하역장비설치와 우리청 출장소 청사부지등의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 있으므로, 동시설의 설치시 항만의 기능이 관광도시기능에 조화될수 있도록 하고, 귀의회에서 건의한 시민 휴식공간 확보등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4. 또한, 관공선 부두 배후 부지상에는 현재 추진중인 숙초-울릉간 여객선 항로가 개설되어 여객터미날이 건립 운영될 경우, 동시설 배후부지(1,000㎡)에 여객선 이용객및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 확보를 위하여 장의자 설치및 화단 가꾸기등의 조경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항만을 조성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동 해 지 방 해 운 항 만 청



교

통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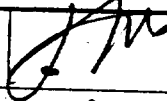
우100-162 서울 중구 봉래2가 122 / 전화(02) 392-6213 / 전송 392-9809

문서번호 해운 13131- 87

시행일자 1993. 8. 3

수 신 강원도 속초시 의회 의장

참 조

선결	의 장		지 시		
접	일자 시간	1993. 8. 9	결	부 의 장	
수	번호	694	재	과 장	
처 리 과	속 초 시 의 회		공	계 장	31
담 당 자			람		

제 목 건의서에 대한 회신

전 문 기 관

'93.7.28자 귀의회에서 제출한 건의서는 관할관청인 함만청으로 하여금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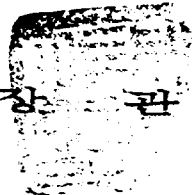
교

통

부

장

관



강 원 도

우 200-700 춘천시 봉의동 산15번지 / 전화(0361) 57-5074 / 전송

문서번호 위생 65400 - 204

시행일자 1993 . 8 . 2

(경 유)

수 신 속초시의회 의장

참 조

선결	의 장	지 시	주제위원회용제시각 으로처리함	
접	일자 시간	결	과 장	재 장
수	번호	재	계 장	공 랑
처 리 과	의견사자라			
담 당 자				

제 목 건의서 회신

전문위원

1. 속의회 13131 - 100 (93. 7. 28) 호의 관련입니다.
2. 귀의회에서 건의하신 관광객 편의제공 차원의 영업시간제한 완화 건의는
우리도에서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보건사회부와,내무부에 관광객 편의제공과 주민소득
증대 차원에서 영업시간 일부완화를 건의하여 놓고 있으며
3. 검토한 의견이 회신되는대로 우리도에서 일부 완화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강 원 도 지 사

강 원 도 의 회

우 200-700 춘천시 봉의동 15번지 / 전화 (56~8036) / 전송 (55~8167)

문서번호 의사 제 318호
 시행일자 1993. 8. 5.
 경 유
 수 신 속초시의회의장
 참 조 (중앙동 469-6)

선결	의장	JW	지시	
접	일자 시간	93. 8. 9	결	부의장
수	번호	695	재	과장
처리과	속초시의회		공	계장
담당자			람	

제 목 건의서 처리결과 통지

전문위원

1. 평소 지방자치 발전에 남달리 노력하고 계신 귀 기관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2. 귀 기관에서 1993. 8. 2 본 의회에 제출하신 “심야영업중 관광지내 대중음식점에 대한 제한시간 완화촉구 건의서”는 집행부로 하여금 처리토록 이송하고 아울러, 본의회 소관위원회에 통보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끝으로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끝.

강 원 도 의 회 의



재 무 부

우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 전화 504 - 3675 / 전송 503-9324

문서번호 소비 46016 - 760

시행일자 1993. 8. 7. ()

문의안내담당자
김보경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목적세 신설 반대 건의에 대한 회신

1. 귀 의회의 목적세 신설반대 건의(1993.)에 대한 회신입니다.
2. 통 건의에 대하여는 우려부 업무에 참고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년 결	의 장	결 부의장
접수일자	1993. 8. 13.	과 장
처리부서	속초시의회	계 장

전문위원

재 무 부 장



수신처 상주시의회의장, 진천군의회의장, 김포군의회의장, 여천군의회의장,
동해시의회의장, 무주군의회의장, 속초시의회의장, 강원도교육위원회의장,
화순군의회의장, 남원군의회의장

"정직·성실하게 봉사한다"

내 무 부

우 110-760 /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 전화 (02) 731-2280 / 전송 (FAX) 733-2755

문서번호 자 연 13640-556

시행일자 1993.08.31.(3)

경유

수신 강원도 속초시의회의장

참조

선결	의장	지	
접	일자 시각	시	
수	번호	결	부의장
처	리 과	재	과장
담	당 자	공	계장
		람	

제목 건의서에 대한 회신

전문위원

1. 속의회 13131-131호('93. 8. 24)와 관련입니다.

2. 국립공원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정사항을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3. 설악산국립공원내 쓰레기 매립 관련 건의에 대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철저히 조사하여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사오니 양지 하시기 바라며

4. 국립공원관리권 이관문제는 공원관리주체가 누구이던간에 국립공원은 우리 당대는 물론 후손 모두가 이용해야 할 소중한 자원이라는 점에서, 개발보다는 보존에 중점을 두면서 국민들의 적정한 이용을 도모해야 할 기본적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67년도 국립공원제도를 도입한 이래 '87. 6월까지 공원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오다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87. 7월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국립공원을 관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시점에서 몇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하여 국립공원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재위임하는 것은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 할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끝.

내 무 부 장 관

지역경제국장 전결

강

원

도

우 200-700 /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번지 / 전화(0361)54-0101 / 전송

문서번호 관광 30300 - 902

시행일자 1993. 9.20. ()

경유

수신 속초시의회 의장

참조

선결	의결	지시	
접	일자 시각	결	부의장
수	번호	채	
처리과	의회사무과	공	파장
담당자		람	계장

제목 건의서에 대한 회시

1. 속의회 13131 - 131 (93. 8. 24)호의 관련입니다.

2. 위호 관련 설악산 국립공원내 쓰레기 불법매립에 따른 관리개선 촉구 건의에 대하여 국립공원 관리청인 내무부에 붙임과 같이 국립공원의 관리개선을 위하여 설악산국립공원의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줄것을 건의하였으며.

3. 우리도에서도 국립공원 관리권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회시하오니 앞으로도 계속 지역사회 발전과 도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내무부 건의서 사본 1부 끝.

강

원

도

지



강

원

도



우 200-700 /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번지 / 전화(0361)54-0101 / 전송

문서번호 관광 30300 -

시행일자 1993. 9. . ()

경유

수신 내무부장관

참조 자연공원과장

선결			지	
접	일자		시	
수	번호		결	
처 리 과			재	
담 당 자			공	
			람	

제목 국립공원관리청 직무대행에 관한 건의

1. '91년도 국정감사시 지역국회의원 발의로 국립공원 관리권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을 건의하였으나 자연공원법상 이관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으나

2. '93. 8. 23 설악산국립공원구역내 대량 쓰레기 매립사건을 계기로 속초시 의회와 시군의회 의장단에서 다시 국립공원 관리권 이양문제가 거론 건의 되었으며

3. '87년도 이관후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관리실태 및 주민여론을 감안 할때 공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보호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대행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건의하오니

4. 자연공원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대행에 관한 고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국립공원 관리청 직무대행에 관한 건의서 1부 끝.

강

원

도

지

사



國立公園 管理權 移管建議

□ 背 景

○ '91年度 國政監事時 指摘 ————— 內務部建議

○ 地方議會 議員 移管 建議

— 道議會 議員 : '91年度 부터

— 束草市 議會 : 2 回 ['92. 11. 9, '93. 8. 30]

— 市郡議會 議長團 管理權 移管 建議書 採擇

○ 要求 및 建議 理由

1. 公園 移管後 開發不振 및 地域開發 寄與度 微弱

— 基本計劃 樹立後 開發遲延에 따른 私有財產權 侵害로 民願若起
· 小金剛, 雉岳山, 百潭寺, 將帥臺 地區等

— 公園計劃 立案時 地方自治團體 參與排除[意見만 提出]로 地域
綜合開發 計劃과 連繫未洽

— 公園資源의 效率的 保護와 開發이 時急한 實情임에도 公團은
經營的 管理에 置重

2. 公園管理 二元化로 保護管理 疏忽 및 住民不便 招來

— 公園管理 業務限界 模糊로 管理의 不適正

· 不法施設物 團束, 不法營業行爲 團束, 쓰레기 處理, 山火警防,
山林病蟲害 防除等



— 公園區域內 各種 認許可時 住民不便 招來

- 公園 管理廳 : 公園事業 施行許可, 占用 및 使用許可
- 地方自治團體 : 建築許可, 觀光事業許可, 營業許可 等

3. 地域特性을 無視한 劃一的인 統制 및 規制

— 公園關聯 民願에 대한 責任處理 能力 缺如로 住民福祉를 最優先으로 하는 自治團體 行政의 不便招來

— 同一 觀光圈內에서의 觀光開發計劃 立案에 連繫, 調和 困難

□ 建 議

- 自然公園法 第17條 및 同法 施行令 第10條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 職務代行 告示로
- 한라산, 慶州, 오동도와 같이 地方自治團體에서 管理토록 要望

교 통 부

우100-162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 전화 (02) 392-9733 / 전송

문서번호 공개 13131-375

시행일자 1993. 8. 25 ()

(경유)

수신 속초시의회의장

참조

선결	의 장	지	
접	일자 시간	결	부익장
	8. 8. 30	재	과장
수	번호	공	계장
	745	람	
처	리 과		
	속 초 시 의 회		
담	당 자		

제목 속초공항 시설 확충건의에 대한 회신

전문위원

귀 시의회에서 우리부에 건의하신 속초공항 시설 확충에 대하여는 그동안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육상교통 체증이 심화되면서 항공교통이 대중화되어 국내 대부분의 공항에 혼잡현상이 가중되고 있어 우리부에서는 2000년대를 대비한 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귀 시의회에서 건의하신 의견은 동 업무에 참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교 통 부 장 관

“'94년은 한국방문의 해 입니다”

한 국 공 항 공 단

우 : 157-701 서울 강서구 과해동 274 전화: (02) 660-2244 전송: (02) 663-8833

문서번호 기 조 330 - 467P

시행일자 1993. 8. 26

(경유)

수 신 숙초시의회 의장

참 조

선결	의자	지시	
접	일자 시간	결재	부의장
수	번호	과장	
처리과	숙초시의회	계장	
담당자			

제 목 숙초공항시설 확충 건의에 대한 회신

전문위원

1. 숙초의 13131 - 110호('93. 8. 16) 관련입니다.

2. 귀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귀 의회에서 지역발전의 일환으로 숙초공항 시설확충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드립니다.

3. 귀 의회에서 건의하신 숙초공항시설확충을 위하여 저희 공단에서는 '92년도까지 약 9억여만원을 투자하여 계류장보강, 활주로 주변장애물 제거공사등을 시행한 데 이어, '93년에는 약 21억9천여만원을 투자하여, 항공동화시설 보강, 활주로포장보강 공사등을 시행중에 있으며 '94년에도 약15억원 정도의 재원을 확보하여 발.변전설 이설 여객정사 증축등을 계획하고 있는 등 항공기 안전운항시설 확보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저희 공단의 재정여건상 일시에 많은 투자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4. 또한 귀 의회의 건의를 정부의 영동지방 공항개발정책과 연계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교통부 서울지방항공정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한 국 공 항 공 단 이 사

“ 맞이하자 세계손님, 준비하자 방문의 해 ”



환 경 처

우 138-240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16 / 전화 (02)421-0260 /전송 421-0280

문서번호 폐제 67507 - 568

시행일자 1993. 9. 8. (년)

경유

발음 속초시의회의장

참조

선결	의장	지시	
접	일자 시간	193. 9. 14	부위원장
수	번호	802	과장
처리과	속초시의회	계장	
담당자			

제목 건의에 대한 회신

신문위원

1. 귀의회 1313-131호('93. 8. 24)와 관련입니다.

2. 귀의회에서 국립공원내의 쓰레기처리와 관련하여 건의한 사안은 내무부의 산하 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국립공원관리업무와 관련된 내용인 바, 주무부처인 내무부에 대해 불임 공한사본과 같이 적의 조치토록 하였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해서도 불임 공한사본과 같이 국립공원에 대한 관리철저를 촉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국립공원관리를 지방환경청에서 관리토록 건의하신 내용은 정부부처간 기능조정시 검토되도록 노력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임 : 공한사본 2부. 끝.

환 경 처 장

폐기물 관리 과장 직결



환 경 처

우 138-240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16 / 전화 (02)421-0260 /전송 421-0280

문서번호 폐재 67507 - 668

시행일자 1993. 9. 8. (년)

경유

발음 내무부장관

참조

선결			지	
점	일자 시간		시	
수	번호		결재	
처리과			공람	
담당자				

제목 설악산 국립공원내 쓰레기 불법매립에 따른 관리개선 촉구

1. 속초시의회 1313-131호('93. 8. 24)와 관련입니다.

2. 속초시의회에서 보내온 건의서에 따르면 귀부의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악산 관리사무소에서 산쓰레기를 하산하여 적정처리하지 않고 공원내에 불법매립해온 사실을 알려온바, 귀부에서 그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이의 근원적인 방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아울러 타 국립공원내의 쓰레기처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속초시의회 건의서 사본 1부. 끝.

환 경 처 장

